

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(제4판)」 개정전후대비표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I. 목적, 기본원칙 및 정의		
1	<p>1. 목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·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</p> <p>○ 특히, 대학에 따라 규모, 운영 방법,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</p> <p>※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적용 가능</p>	<p>1. ---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 ----- -----</p> <p>○ ----- ----- -----</p> <p>※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</p>
2	<p>2. 기본원칙 (신설)</p>	<p>2. -----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작성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등 기초 방역수칙은 유지</p>
2	<p>3. (신설) (신설)</p>	<p>3. 정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 지침에서 “예방접종완료자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</p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	<p>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예) 예방접종완료일: 5.1.(토), 2주째: 5.15.(토), 지침 적용일: 5.16.(일) 0시부터</p> <p>□ 이 지침에서 “접종증명·음성확인제”란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(이하 접종완료자 등)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‘방역 패스’의 개념을 말함</p> <p>○ (접종완료자 등)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자(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)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</p>
II.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		
3	<p>1.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</p> <p>□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 (이하 담당자)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</p> <p>※ 임신부, 당뇨병, 만성호흡기질환(천식, 만성폐질환자)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</p> <p>※ 대학 방역 계획 수립 및 실천에 학생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학내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에 학생 참여 권고</p>	<p>1. -----</p> <p>□ ----- ----- ‘대학 일상회복지원단’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※ ----- -----</p> <p>※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‘대학 일상회복지원단’으로 전환하여 운영</p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<p>- (신설)</p>	<p>-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별 여건에 맞는 방식의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' 도입</p> <p>— < (참고)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> 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구성)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(총장 또는 부총장 등), 실무담당자, 학생 (반드시 포함) 등 ▶ (기능)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, '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필수 적용 시설(실내체육시설 등) 외의 학내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
5	<p>3.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(출근) 중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</p>	<p>3. ----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</p> <p>-----</p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						
		<p>◆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(별도공지 시까지)</p> <p>○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96 389 2056 604"> <thead> <tr> <th>보건소 선별진료소</th> <th>의료기관 선별진료소*</th> <th>임시선별검사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증상자,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</td> <td>모두 무료검사 (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)</td> <td>모두 무료검사 (사례정의 해당자*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사례정의 해당자)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</p> <p>○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, 진료비 본인 부담 - 단,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(상급종합병원 제외)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(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)</p> <p>○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(해외출국용, 출장·여행 등),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</p> <p>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2판(21.11.26.)</p>	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 선별진료소*	임시선별검사소	유증상자,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	모두 무료검사 (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)	모두 무료검사 (사례정의 해당자*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)
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 선별진료소*	임시선별검사소						
유증상자,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	모두 무료검사 (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)	모두 무료검사 (사례정의 해당자*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)						
6	<p>□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*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<p>*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</p>	<p>□ -----</p> <p>○ -----</p> <p>----- 10일(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) -----</p> <p>* -----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</p>						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○ (신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등교·출근 가능 ○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,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◆ (참고)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동감시 요건)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,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,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 시설의 입소자·이용자·종사자가 아니며, ④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, 수동감시 실시 ※ 특별방역대책 추가방역조치(12.3.)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○ (자가 모니터링) 수동감시 기간 중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○ (외출자제)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출퇴근,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며,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 접촉 최소화 ○ (수동감시 중 검사) 접촉자 분류 직후, 6~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수동감시 유지 ※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○ (수동감시 종료)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-2판('21.11.26.) </div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Ⅲ. 평상시 대응		
11	3. 등교 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업 간 공간 시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집합하지 않으며,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	3. -----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업 간 공간 시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<input type="checkbox"/> (삭제)
Ⅴ.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		
12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,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(참고7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진환자는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시 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<input type="checkbox"/> (신설) *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※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'음성'으로 확인되더라도, 기존 자가격리 및 수동감시는 14일간 지속	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 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 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* ----- 10일간(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) ----- ※ ----- ----- 10일간(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) -----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<p>○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- (신설)</p> <p>○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·시행</p> <p>◆ (참고) 확진환자 역학조사 참고 사항</p> <p>○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※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</p> <p>○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체류기간,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이 결정 ※ 동거생활, 식사, 예배, 강의, 노래방,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</p> <p>○ (신설)</p> <p>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 제10판(21.5.17.))</p>	<p>○ -----</p> <p>- 보건소 또는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시설 이용 제한의 구체적 범위, 폐쇄 기간, 소독 방법 등 결정·시행 ※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</p> <p>○ (삭제)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반과 의논하여 결정</p> <p>◆ (참고) 확진환자 역학조사 참고 사항</p> <p>○ -----</p> <p>※ -----</p> <p>○ -----</p> <p>※ -----</p> <p>○ 다중이용시설의 경우, 시설 내 감염 및 전파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 결정(소독명령과 폐쇄명령 구분) ※ 「감염병예방법」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(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’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,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)</p> <p>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 제10-2판(21.11.26.))</p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													
	<p>◆ (참고)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,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○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○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6 611 1131 126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93 616 394 671">발생근</th> <th data-bbox="394 616 573 671">이동 경로</th> <th data-bbox="573 616 1124 671">시설 이용제한 범위(예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93 671 394 922" rowspan="2">1명 발생 (방문 포함)</td> <td data-bbox="394 671 573 762">■ 이동 경로 명확</td> <td data-bbox="573 671 1124 762">■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4 762 573 922">■ 이동 경로 불명확</td> <td data-bbox="573 762 1124 922">■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(강의실,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식당, 승강기 등)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93 922 394 1166" rowspan="2">복수 발생 (방문 포함)</td> <td data-bbox="394 922 573 1166">■ 이동 경로 명확</td> <td data-bbox="573 922 1124 116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※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■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4 1166 573 1262">■ 이동 경로 불명확</td> <td data-bbox="573 1166 1124 1262">■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	발생근	이동 경로	시설 이용제한 범위(예시)	1명 발생 (방문 포함)	■ 이동 경로 명확	■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	■ 이동 경로 불명확	■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(강의실,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식당, 승강기 등)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	복수 발생 (방문 포함)	■ 이동 경로 명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※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■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	■ 이동 경로 불명확	■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	<p>(삭제)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반과 의논하여 결정</p>
발생근	이동 경로	시설 이용제한 범위(예시)													
1명 발생 (방문 포함)	■ 이동 경로 명확	■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													
	■ 이동 경로 불명확	■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(강의실,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식당, 승강기 등)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													
복수 발생 (방문 포함)	■ 이동 경로 명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※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■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													
	■ 이동 경로 불명확	■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													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13	<p>□ 대학은 학내 감염우려 해소를 위해,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*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</p> <p>*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, PCR검사결과(음성확인) 대체 가능</p> <p>○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</p> <p>- (신설)</p>	<p>□ ----- ----- -----</p> <p>* ----- -----</p> <p>○ ----- -----</p> <p>※ 완치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도 전파력이 없는 사멸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PCR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 다수</p> <p>◆ (참고)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</p> <p>○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</p> <p>○ (단순 재검출)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, 임상증상 없는 경우</p> <p>○ (재감염 추정)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①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</p> <p>② 최초 확진일 이후 45~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</p> <p>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2판(21.11.26.)</p>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VI. 강의실·기숙사 등 시설 관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	<p>1. 강의실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강의실 유형 및 수업 방법에 따라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 시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41 598 1144 86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단계</th> <th>2단계</th> <th>3단계</th> <th>4단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좌석 있는 강의실</td> <td colspan="2">■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td> <td colspan="2">■ 좌석 두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)</td> </tr> <tr> <td>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</td> <td colspan="2">■ 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</td> <td colspan="2">■ 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</td> </tr> <tr> <td>음악 계열</td> <td colspan="4">■ 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(두 칸)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</p>	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좌석 있는 강의실	■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		■ 좌석 두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)		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	■ 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	■ 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		음악 계열	■ 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	<p>1. -----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강의실 방역기준 완화)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(개정) '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67 598 2069 99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좌석 있는 강의실</td> <td>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※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</td> </tr> <tr> <td>좌석 없는 강의실 (체육관, 무용실 등)</td> <td>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</td> </tr> <tr> <td>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 등)</td> <td>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(단,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)</td> </tr> <tr> <td>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(실험실습 등)</td> <td>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	좌석 있는 강의실	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※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	좌석 없는 강의실 (체육관, 무용실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(단,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)	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(실험실습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좌석 있는 강의실	■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		■ 좌석 두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	■ 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	■ 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음악 계열	■ 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좌석 있는 강의실	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※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좌석 없는 강의실 (체육관, 무용실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(단,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(실험실습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	<p>2. 기숙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권장</p>	<p>2. -----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<p>※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19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자치활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아리방,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도 접촉 최소화 방안 혹은 밀집도 완화 방안*을 마련하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예시) 칸막이가 있는 좌석 위주 운영, 좌석 분산 배치, 이용자 수 제한 등 ○ (신설)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----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삭제) ○ (학생자치활동)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준수하여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학생자치활동 중 취식 시 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 - 단, 학생회 활동의 경우 ①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학내 공간에서 ④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*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예시) 21년 겨울학기에 학생회실 또는 강의실에서 사적 모임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진행할 경우 4m² 당 1명 준수 ○ (대학 내 선거운동)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,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 비밀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, 행사·집회 관련 지침을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20	<p>□ 통학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, 의심 증상자는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<p>○ 차량 내·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*하고, 대학의 여건에 따라 좌석 분산 배치, 배차 간격 조정 등의 차량 내 밀집도 완화 조치 실시</p> <p>□ 동아리,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 등 비대면·비접촉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○ 접촉·대면 모임 및 행사(수련회, 캠프 등)는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드시 준수</p> <p>□ ----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----- --- - 대화, 전화통화 자제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(단,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) ○ -----하며,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<p>□ 학내·외 행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삭제) ○ (삭제)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(신설)	<p>◆ (참고)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행사 인원)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(48시간 이내), 11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○ (행사 정의) ①공공기관·법인·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이며,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③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, ④일정·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● (행사) 단체·법인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 - 동창회·동호회·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○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,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<p>※ 출처: 중수본 정례브리핑(21.11.10. "의료기관·노인요양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"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) 「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」(대학학사제도과-14661, '21.11.10) 준수 - (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) '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' 준수 시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가능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21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22학년도 1학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, 학생 인솔,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 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※ 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○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원칙)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,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,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- (예외) 1박 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,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적인 PCR검사*가 필요하며, 초과되는 일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결정 *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므로, 미리 재검사 필요 ○ 취식 시 식당·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○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금지 ○ 마스크 착용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22학년도 1학기) 중앙사고수습본부의 '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'을 준수하여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내 방역담당 부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학내에 공지 - 단,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(교과+비교과) 진행 시 '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' 추가 준수
▷ 참고 ◁		
25	(신설)	2.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34	(신설)	2-1.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
49	(신설)	2-2. 신종 변이바이러스(오미크론) 대응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

쪽	현행(3판)	4판 개정(안)
62	(신설)	9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
87	(신설)	16.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카드뉴스